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, 과속,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25호, 2025. 8. 14. 공포, 2025. 11. 1. 시행 및 2026. 1. 1. 시행)됨에 따라, 인용 조문번호를 개정 조문번호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5조의9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조의2제3항”을 “법 제5조의9제3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4제1항 전단 중 “법 제5조의2제4항”을 “법 제5조의9제4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조의3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5조의10제1항제3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5조의3제2항”을 “법 제5조의10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조의4제1항”을 “법 제5조의11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조의6”을 “법 제5조의13”으로 한다.

제4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조의7제1항”을 “법 제5조의14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4항제1호 중 “법 제5조의7제1항”을 “법 제5조의14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법 제5조의8제1항”을 “법 제5조의15제1항”으로

한다.

제15조의2제1항제1호의2 중 “법 제5조의7”을 “법 제5조의14”로 한다.

별표 5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 다목 중 “법 제5조의5제1항”을 “법 제5조의12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란 다목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70조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70조제1항제1호의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8, 제4조의9, 제15조제4항 및 별표 5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조의2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) ① <u>법 제5조의2제1항</u> 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	제4조의2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) ① <u>법 제5조의9제1항</u> -----		-----
1. ~ 4. (생략)		1. ~ 4. (현행과 같음)		-----
② ~ ⑦ (생략)		② ~ ⑦ (현행과 같음)		-----.
제4조의3(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) <u>법 제5조의2제3항</u> 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		제4조의3(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) <u>법 제5조의9제3항</u> -----		-----
1. ~ 3. (생략)		1. ~ 3. (현행과 같음)		-----
제4조의4(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<u>법 제5조의2제4항</u> 에 따른 전문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전문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위원회”는 “전문위원회”로 본다.		제4조의4(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<u>법 제5조의9제4항</u> ---		-----
② · ③ (생략)	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		-----
				-----.
				-----.

제4조의6(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
가 등) ① 법 제5조의3제1항제3
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
말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적
정 이윤을 산정하는 경우 「국
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
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의 예정
가격 결정기준을 고려해야 한
다.

제4조의7(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
가 대상 품목 등) ① 법 제5조의
4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운송품목”이란 다음 각 호
의 품목을 말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조의8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
주지 의무) 법 제5조의6에 따른
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운송계약
또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려
는 다른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
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
체결 전까지 알려야 한다.

제4조의6(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
가 등) ① 법 제5조의10제1항제
3호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5조의10제2항-----

-----.

제4조의7(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
가 대상 품목 등) ① 법 제5조의
11제1항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8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
주지 의무) 법 제5조의13-----

-----.

1. · 2. (생략)

제4조의9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)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15조(권한의 위탁) ① ~ ③ (생략)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.

1.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

2. ~ 7. (생략)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의8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9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) 법 제5조의14제1항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권한의 위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법 제5조의14제1항-----

2. ~ 7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 법 제5조의15제1항

-----.

제1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①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(법 제47조의2제4항,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·재위임 또는 위탁받는 자를 포함하며,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의 경우 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) 및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(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의2. 법 제5조의7에 따른 화물
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
하는 운임의 신고에 관한 사
무

제1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①-----[illegible]

1의2. 법 제5조의14-----

2. ~ 14. (생략)	2. ~ 1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물류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025